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	총무과

(2017. 12. 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유 준 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3일(목)
- 제출자 : 전승학 의원 외 9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11월 24일(금)

4.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9조1항

5. 제정이유

-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

6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규정(안 제3조)
- 자매결연 등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-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자매결연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7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마포구 국외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,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이며 우호교류 체결지로는 노르웨이 아스케르시가 있음.

기존 마포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로 자매결연 등 선정기준,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,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교적 결례를 방지하고 상호 방문하여 문화 및 우호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아울러 글로벌 마포 발전을 위해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